

- 2021 읍면 정기종합감사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21년 읍면 정기 종합감사 처분요구 목록

연번	소관부서	시 년 행 도	처분요구 (신분상) 조 치	재정상조치		신분상 조 치	제 목
				내역	금액(원)		
	합계	17건	시정14 주의3		5,216,906	훈계10명	
1	□□□	2018~ 2021	시정				공금계좌 관리 부적정
2	□□□	2019~ 2021	시정				장애인등록증, 장애인 자동차 표지 회 수 업무 소홀
3	□□□	2019~ 2020	시정	추징	25,000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부과 및 면 제처리 부적정
4	□□□	2020	시정	회수	1,428,000		시설공사 추진 부적정
5	□□□	2019~ 2020	시정	회수	1,220,000		건축공사 추진 업무 소홀
6	○○○	2018~ 2021	시정				공금계좌 관리 부적정
7	○○○	2018~ 2021	주의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부적정
8	○○○ @@@@@	2019~ 2020	시정	회수	678,110	훈계10명	시간외근무수당 수령 부적정
9	○○○	2018~ 2019	주의				기술용역 계약업무 추진 부적정
10	○○○	2018~ 2021	시정				장애인등록증 회수 업무 소홀
11	○○○	2019~ 2020	시정	추징	15,000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부과 및 면 제처리 부적정
12	○○○	2019~ 2020	시정	회수	447,000		시설공사 추진 부적정
13	△△△	2018~ 2021	주의				기술용역 계약업무 추진 부적정
14	△△△	2018~ 2021	시정	세입	8,796		공금계좌 관리 부적정
15	△△△	2018~ 2021	시정				장애인등록증 회수 업무 소홀
16	△△△	2018	시정	추징	10,000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부과 및 면 제처리 부적정
17	△△△	2018~ 2019	시정	회수	1,385,000		시설공사 추진 부적정

【일련번호: 1】

정 선 군
시정

【제 목】 공금계좌 관리 부적정

【소관기관】 □□□

【조치기관】 □□□

【조치사항】 시정

【내 용】

1. 현 황

○ 계좌보유 현황

관리담당	계좌내용	계좌번호	예금종류	사용여부(최종거래일)	비고
총무팀	일상경비	-	공금예금	미사용('07.01.04.)	
“	세입세출외현금	-	공금예금	사용	
“	온비드	-	보통예금	사용	
		공매 관련 전용 통장 : 건강보험, 장기요양, 과오납산재, 과오납실업 급여 등 사회보험 관련 환급 계좌로 이용 중			
“	재난관리기금	-	공금예금	미사용('05.12.30.)	
“	당직비	-	보통예금	미사용('21.01.05.)	
복지팀	정부양곡관리	-	보통예금	사용	
민원팀	민원 제증명 카드수납	-	보통예금	사용	

2. 내 용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조제1항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별표 1]에 따르면 읍면동의 지출원은 ‘지출업무담당’이며(재무·회계업무담당까지 지정 가능),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지출업무담당자’이다.
- 또한 세입세출외현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사무관리상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현금으로 그 출납이 세입세출외현금 통장에 보관하는 것을 말하며 “제4절 세입세출외현금” 제75조 및 제76조에 따르면 세입세출외현금의 종류에

는 1. 보증금 2. 보관금 3. 잡종금 등 기타(사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이며,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보통예금계좌(가상계좌를 포함한다)를 개설하여 세입세출외현금을 계좌이체로 납입받을 수 있다. 다만, 납입금에 대하여는 세입세출외현금계좌로 즉시이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그러나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사용이 종료된 3건의 휴면 통장(일상경비, 재난관리기금, 당직비)을 정리하지 않았고, 세입세출외현금 통장이 보통예금이 아닌 공금예금으로 되어 있어 외부에서의 입금이 불편하여 온비드통장을 세입세출외현금 통장(보통예금)으로 사용 중에 있음에도, 복지팀과 민원팀에서는 정부양곡 관리와 민원제증명카드수납용 거래를 세입세출외현금 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별도 통장을 개설하여 운영·관리하고 있어 회계관직 미지정자가 정부양곡 및 민원제증명카드수납에 대한 세입세출외현금 회계처리를 하는 등 세입세출외현금을 부정하게 운영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장은

- [시정] ① 사용종료된 휴면계좌 3건(일상경비, 재난관리기금, 당직비)을 해지하여 주시고,
- ② 정부양곡관리 계좌 및 민원제증명카드수납 계좌를 정리한 후 세입세출외현금통장으로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

정 선 군 시정

【제 목】 장애인등록증, 장애인 자동차 표지 회수 업무 소홀

【소관기관】 □□□

【조치기관】 □□□

【조치사항】 시정

【내 용】

1. 현 황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 자동차 표지 미회수 현황

(단위: 매)

장애인등록증			장애인 자동차 표지			비고
계	회수	미회수	계	회수	미회수	
25	-	25	36	6	30	

2. 내 용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제2항에 따르면, 등록한 장애인이 장애인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거나, 사망하면 그 등록증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7조(장애인사용 자동차 등 표지의 발급 등)와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사업안내」에 따르면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으며, 자동차의 양도·증여·교환 등 자동차 소유권의 변동, 차량 등록의 말소, 그리고 차량 변경 시 장애인이나 보호자는 이를 즉시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인적사항, 차량정보 변동 사항을 제공하여 있으며,

- 읍면장은 장애인 사망하거나 장애인 등록이 취소, 재발급하는 경우 장애인등록증이 부당하게 사용 할 수 없도록 장애인 등록증을 회수하여 폐기하고,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량에 대하여서도 소유권 변동, 말소 그리고 차량 번호의 변경사항을 파악하여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회수하여 폐기 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럼에도, □□□에서는 2019년 7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사망한 등록 장애인 25명에 대한 장애인 등록증과 장애인 표지 발급 대상자가 사망, 차적변동(폐차 소유주상이등 장애인 자동차 표지 30건에 대하여 즉시 회수해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회수 조치를 하지 않아 장애인등록증 및 자동차 표지 회수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장은

[시정] 사망한 장애인 등록증 및 폐기·무효처리 대상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회수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등록하고 폐기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3]

정 선 군 시정

【제 목】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부과 및 면제처리 부적정

【소관기관】 □□□

【조치기관】 □□□

【조치사항】 추정 25,000원

【내 용】

1. 현황

연번	신청일자	신청인	수수료 징수여부	비고(사유)
1	2019.07.08.	○○○	미징수	분실
2	2019.09.27.	○○○	면제	분실
3	2020.02.17.	○○○	미징수	분실
4	2020.11.04.	○○○	미징수	분실
5	2020.11.27.	○○○	미징수	분실

2. 내용

- 「주민등록법」 제27조 및 같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주민등록증 자체의 결함으로 자연적으로 훼손된 경우, 성명, 생년월일 또는 성별이 변경된 경우, 주민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주소 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주민등록증의 변경 내용란이 부족한 경우, 자연적 재해,재난으로 인해 외과적 시술 등으로 용모가 변하여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의 면제사유를 제외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에 따라 1명당 5천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정선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5조에 따르면 수수료는 전자수입증지 및 전자시스템 민원처리 등에 따라 현금, 신용카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 그러나 □□□에서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업무를 처리하면서 수수료 미징수 4건 20,000원, 면제대상이 아님에도 수수료 면제 1건 5,000원 등 총 5건 25,000원의 수수료 부과업무 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장은

[시정] 미징수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25,000원을 추징하시고, 업무연찬을 통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4]

정 선 군
시정

【제 목】 시설공사 추진 부적정
【소관기관】 □□□
【조치기관】 □□□
【조치사항】 회수 1,428천원
【내 용】

1. 현 황

[표] 공사 현황

사 업 명	계약금액 (천원)	공사기간	계약자	사 업 량	비고
2020년 *****소규모급수 시설 보수공사	37,950	‘20.07.08. ~ ‘20.09.08.	#####	- 급수관로 67m - 배수관로 109m - 웬스 13경간	885천원 과지급
2020년 &&&& 도로보수공사	34,,780	‘20.06.150 ~ ‘20.07.16.	@@@@@@	- 땅깍기 163m³ - 석축찰쌓기 80m - 아스콘포장 31m	543천원 과지급

2. 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 제42조 및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2014-297호)』에 의하면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는 그 감독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 74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39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서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에서는 상기 “1 현황”과 같이 부적절하게 시공하였으나 시정 및 설계 변경을 하지 않고 1,428천원(제경비포함)을 부당하게 집행하는 등 공사업무 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장은

[시정] ‘2020년 * 소규모급수시설 보수공사’에서 885천원, ‘2020년 &&& 도로보수공사’에서 543천원에 대한 과다지출 금액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5]

정 선 군
시정

【제 목】 건축공사 추진 업무 소홀

【소관기관】 □□□

【조치기관】 □□□

【조치사항】 회수 1,220천원

【내 용】

1. 현 황

○ 공사계약 현황

사 업 명	계약금액 (천원)	계약일자	계약자	사 업 량	비고
		준공일자			
### 경로당 신축공사(건축)	195,756	‘19.10.30.	*****	경로당 98.9㎡ 신축	복지
		’20.04.10.			
@@@@ 공동급식장 신축공사(건축)	199,344	‘20.09.10.	\$\$\$\$\$	마을공동급식장 111.8㎡ 신축	산업개발
		’20.12.21.			

2. 내 용

- 『건설기술 진흥법』 제42조 및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4-297호)』 에 의하면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는 그 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 74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39호)』 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 그러나 □□□에서는 설계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건설공사의 감독업무와 공사비 지출을 수행하여야 함에도 설계내역, 착공내역서에 컨테이너형 가설사무소가 설계 내역상 경비단가로 각각 ### 경로당 신축공사에 금447,273원(원가계산 금액 금 584,000원), @@@@ 공동급식장 신축공사에 507,810원(금636,000원)이 반영되어 있으나,
- 건축공사시 가설사무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공사준공 되었으며, 2건의 건축공사에 대하여 금1,220,000원을(584,000+636,000) 과다하게 지출하는 등 공사추진 업무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장은

[시정] “### 경로당 신축공사”에 과다 지출된 금584,000원과 “@@@@ 공동급식장 신축공사”에 과다 지출된 금636,000원을 회수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6】

정 선 군

시정

【제 목】 공금계좌 관리 부적정

【소관기관】 ○○○

【조치기관】 ○○○

【조치사항】 시정

【내 용】

1. 현 황

○ 계좌보유 현황

관리담당	계좌내용(목적)	계좌번호	사용여부 (최종거래일)	현재잔액	비고
총무팀	면예산	-	사용 (2021-02-26)	0	
“	자동이체(카드결제)	-	사용 (2021-02-26)	4,917,839	
“	일상경비	-	미사용	0	
“	신용카드	-	사용 (2021-02-26)	4,419,695	
“	재배정	-	사용 (2021-02-26)	0	
“	재난관리기금	-	미사용	0	
“	세입세출외현금	-	사용 (2021-01-19)	2,777,961	
“	일숙직비	-	미사용 (2021-01-08)	0	
복지팀	정부양곡대금	-	사용 (2021-02-25)	35,700	
민원팀	민원 인증기 카드결제	-	사용 (2020-09-10)	0	

2. 내 용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조제1항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별표 1]에 따르면 읍면동의 지출원은 ‘지출업무담당’이며(재무·회계업무담당까지 지정 가능),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지출업무담당자’이다.
- 또한 세입세출외현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사무관리상 일시적

으로 보관하는 현금으로 그 출납이 세입세출외현금 통장에 보관하는 것을 말하며 “제4절 세입세출외현금” 제75조 및 제76조에 따르면 세입세출외현금의 종류에는 1. 보증금 2. 보관금 3. 잡종금 등 기타(사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이며,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보통예금계좌(가상계좌를 포함한다)를 개설하여 세입세출외현금을 계좌이체로 납입받을 수 있다.

- 그러나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사용이 종료된 3건의 휴면 통장(일상경비, 재난관리기금, 당직비)을 정리하지 않았고, 복지팀과 민원팀에서는 정부양곡관리와 민원제증명카드수납용 거래를 세입세출외현금 통장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도 통장을 개설하여 운영·관리하고 있어 회계관직 미지정자가 정부양곡 및 민원제증명카드수납에 대한 세입세출외현금 회계처리를 하는 등 세입세출외현금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장은

- [시정] ① 사용종료된 휴면계좌 3건(일상경비, 재난관리기금, 당직비)을 해지하여 주시고,
- ② 정부양곡관리 및 민원제증명카드수납 업무를 세입세출외현금통장으로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7】

정 선 군
주의

【제 목】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부적정

【소관기관】 ○○○

【조치기관】 ○○○

【조치사항】 주의

【내 용】

1. 현 황

○ 통장 잔액 현황

계좌용도	계좌번호	현재잔액	내 용	비고
세입세출외현금	-	2,777,961	이자발생(20.12.27.) : 1,251원 세입처리(21.01.08.) : 2,151원 ※농협 착오로 차액 900원 입금	

2. 내 용

○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75조 및 제77조에 따르면 세입세출외현금은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등의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하며, 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지방재정법」 제82조에 의한 5년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 청구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 편입을 요구하여야 하며, 세입세출외현금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경우에는 세부내역을 부기하여 이월하도록 되어 있다.

○ 따라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해서는 매년 회계연도 종료 도래 시 미반환금의 반환시기 경과여부 및 미반환 사유 등을 분석하여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월을 결정하여야 하며, 뚜렷한 사유 없이 반복하여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그러나 ○○○에서는 세입세출외현금 중 정당한 권리자에게 지급 또는 세입조치 하지 않아 2021년 3월 25일 감사일 현재 2,777,961원의 잔액이 남아 있었으며, 2020년 12월 27일 발생한 예금이자 1,251원을 연도가 지난 2021년 1월 8일 세입처리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장은

[주의] 세입세출외현금 통장에 남아 있는 잔액에 대해 정당한 권리자에게 지급 또는 세입조치하여 세입세출외현금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8]

정 선 군

시정 · 문책

【제 목】 시간외근무수당 수령 부적정

【소관기관】 ○○○

【조치기관】 ○○○, @@@@

【조치사항】 회수 678,110원

【문책대상】 훈계 10명

1. 현황

○ 시간외수당 인정시간 과다 산정 현황

(단위:시간, 원)

[illegible]

2. 내 용

- ○○○에서는 소속 일반직 직원들이 시간외로 근무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액분(10시간)과 실적분을 합산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산정하고 있다.
-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르면 시간외근무명령은 1일 4시간, 월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현업공무원 등’에 대하여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해당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 중에서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대상자를 지정하고 휴일 및 토요일에 한하여 8시간 범위 내 시간외근무명령 발령이 가능하다.
- 또한 자치행정과-7293(2018.3.30.)호 ‘산불순찰근무 시간외근무 산정방법’ 공문에 따르면 주말 및 공휴일에 한하여 8시간(480분) 범위 내 시간외근무가 가능하며 산정방법과 맞지 않게 8시간을 초과하여 시간외 근무수당을 수령하는 경우 부당수령액에 대한 전액을 환수조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하지만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산불예방 순찰활동 시간외근무를 하면서 현업 상한시간(480분)을 초과하여 수당시간을 신청 및 정산하였고, 2020년 7월 현업 지정이 되지 않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업무에 대해 초과근무를 하면서 일반 4시간(240분)을 초과하여 현업 6시간(366분)으로 산정하여 부당수령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장과 @@@@은

[시정] 부당수령한 시간외수당을 환수조치하여 주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9]

정 선 군

주의

【제 목】 기술용역 계약업무 추진 부적정

【소관기관】 ○○○

【조치기관】 ○○○

【조치사항】 주의

【내 용】

1. 현 황

[표] 용역 현황

[단위:천원]

용역명	계약일	계약금액	성과품	계약업체	비고
**** 농어촌도로 202호선 배수로 정비사업 외2개소 측량용역	'18.10.19	4,067	설계도서, 도면	측량설계공사	일반측량업
\$\$\$ 가뭄대비 비상급수 지원사업 측량용역	'18.10.31	6,930	”	“	”
#### 받기반시설 정비사업 측량용역	'18.12.03	5,070	”	“	”
@@@ 소하천(한대골천) 정비사업 외 1개소 측량용역	'18.12.17	4,150	”	“	”
****배수로 정비사업 외 1개소 측량용역	'19.02.12	4,180	”	“	”
\$\$\$ 주민숙원사업 2지구 측량용역	'19.02.12	3,760	”	“	”
2019년 ○○○주민숙원사업 1지구 측량용역	'19.02.12	5,110	”	“	”
@@@ 소교량 정비사업 외 1개소 측량용역	'19.02.12	4,180	”	“	”
\$\$\$ 농촌생활도로 정비사업 측량용역	'19.02.12	4,180	”	“	”
%%% 농로포장사업 외 1개소 측량용역	'19.02.12	4,180	”	“	”
&&& 농경지 배수로 정비사업 측량용역	'19.03.18	5,160	”	“	”
*** 마을안길 아스콘덧씌우기공사 외 2개소 측량용역	'19.03.18	5,160	”	“	”
@@@ 농어촌도로208호선 가드레일 정비사업 외 2개소 측량용역	'19.03.20	5,054	”	“	”

용역명	계약일	계약금액	성과품	계약업체	비고
### 농경지 배수로 정비사업 외 3개소 측량용역	'19.03.20	8,094	설계도서, 도면	측량설계공사	"
지방하천(\$\$\$) 정비사업 외 2개소 측량용역	'19.03.21	7,078	"	"	"
&&& 농촌생활도로 정비사업 외 1개소 측량용역	'19.05.07	5,160	"	"	"
*** 군도3호선 배수로 정비사업 측량용역	'19.05.28	2,080	"	"	"

2. 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제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하고,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요건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의 사본에 의하여 증명하게 하고, 자격 등의 요건은 관계 기관(법령에 따라 설립된 관련 협회 등 단체를 포함한다)에서 발행한 문서의 사본에 의하여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에 의거 "엔지니어링산업"이란 엔지니어링활동을 통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하며, 공사발주를 위해 작성되는 기본 및 실시설계는 엔지니어링 활동에 해당되고 따라서 설계를 주된 업무로 하는 용역은 엔지니어링 사업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18~2020년에 발주된 “*** 농어촌도로 202호선 배수로 정비사업 외2개소 측량용역”외 16건의 용역은 과업의 목적이 “실시설계”의 작성임을 알 수 있고, 따라서 관련 법령에 따라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아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측량업의 등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측량업의 등록 등)에 따라 일반측량업을 등록한 자와 부당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 성과물 (측량성과서)외 설계도서 등을 납품받아 대가를 지급하는 등 측량용역 계약 및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장은

[주의] 앞으로 실시설계 등 엔지니어링 사업에 대한 용역계약을 측량업체와 체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0]

정 선 군 시정

【제 목】 장애인등록증 회수 업무 소홀

【소관기관】 ○○○

【조치기관】 ○○○

【조치사항】 시정

【내 용】

1. 현 황

○ 장애인등록증 미 회수 현황

(단위: 명,매)

등록 장애인 중 사망자	장애인등록증			비고
	계	회수	미회수	
22	22	8	14	

2. 내 용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제2항에 따르면, 등록한 장애인이 장애인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거나, 사망하면 그 등록증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읍면장은 장애인 사망하거나 장애인 등록이 취소, 재발급하는 경우 장애인 등록증이 부당하게 사용 할 수 없도록 장애인 등록증을 회수하여 폐기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럼에도, ○○○에서는 2018년 7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사망한 등록 장애인 22명중 14명에 대하여 장애인 등록증을 회수·폐기하지 않는 등 장애인 등록증 회수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장은

[시정] 사망한 장애인 등록증을 회수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등록하고 폐기처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1]

정 선 군

시정

【제 목】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부과 및 면제처리 부적정

【소관기관】 ○○○

【조치기관】 ○○○

【조치사항】 추징 15,000원

【내 용】

1. 현황

연번	신청일자	신청인	수수료 징수여부	비고(사유)
1	2019.05.29.	○○○	미징수	분실
2	2019.08.28.	○○○	면제	분실
3	2020.10.16.	○○○	미징수	분실

2. 내용

- 「주민등록법」 제27조 및 같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주민등록증 자체의 결함으로 자연적으로 훼손된 경우, 성명, 생년월일 또는 성별이 변경된 경우, 주민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주소 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주민등록증의 변경내용란이 부족한 경우, 자연적 재해, 재난으로 인해 외과적 시술 등으로 용모가 변하여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의 면제사유를 제외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에 따라 1명당 5천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정선군 체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5조에 따르면 수수료는 전자수입증지 및 전자시스템 민원처리 등에 따라 현금, 신용카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 그러나 ○○○에서는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 업무를 처리하면서 수수료 미징수 2건 10,000원, 면제대상이 아님에도 수수료 면제 1건 5,000원 등 총 3건 15,000원의 수수료 부과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장은

[시정] 미징수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15,000원을 추징하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2]

정 선 군
시정

【제 목】 시설공사 추진 부적정
【소관기관】 ○○○
【조치기관】 ○○○
【조치사항】 회수 447천원
【내 용】

1. 현 황

[표] 공사 현황

사 업 명	계약금액 (천원)	공사기간	계약자	사 업 량	비 고
### 외 2개소 농촌생활도로 정비사업	15,000	‘19.03.19. ~ ‘19.04.18.	%%건설	- 배수암거를 시공하면서 거푸집 (유로폼, 4㎡)을 설치하지 않음 * 회수금액 : 256천원	
&&& 농촌도로302호 정비사업	14,800	‘19.06.10. ~ ‘19.06.21.	**건설	- 1공구 다이크를 설치하면서 당초 설계에 반영된 거푸집(15㎡) 규격인 합판6회로 시공하지 않고 유로폼으로 시공함. * 회수금액 : 108천원	
@@@ 마을안길 석축 설치사업	21,860	‘20.05.01. ~ ‘20.07.21.	@@건설	- 콘크리트 포장을 시공하면서 한 쪽면 구간에 당초 설계에 반영된 거 푸집(9㎡) 규격인 합판6회로 시공하 지 않고 유로폼으로 시공함. * 회수금액 : 83천원	

2. 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 제42조 및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2014-297호)』에 의하면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감
독자는 그 감독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 74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39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에서는 상기 “1 현황”과 같이 부적절하게 시공하였으나 시정 및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447천원(제경비포함)을 부당하게 집행하는 등 공사업무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장은

[시정] ‘### 외 2개소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서 256천원, ‘&&& 농촌도로302호 정비사업’에서 108천원, ‘@@@ 마을안길 석축 설치사업“에서 83천원, 이상 3개 사업 합계 447천원에 대한 과다지출 금액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3 】

정 선 군

주의

【제 목】 기술용역 계약업무 추진 부적정

【소관기관】 △△△

【조치기관】 △△△

【조치사항】 주의

【내 용】

1. 현 황

[표] 용역 현황

[단위:천원]

용역명	계약일	계약금액	성과품	계약업체	비고
2018년 ***외 3개소 농촌도로정비 측량용역	2018.10.15.	7,490	설계도서, 도면	측량설계공사	일반측량업
2018년 *** 마을안길외 1개소 측량용역	2018.11.06.	9,190	”	”	”
2019년 상반기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측량용역	2019.02.08.	10,720	”	”	”
2019년 상수원보호구역 시설정비사업 측량용역	2019.02.11.	8,950	”	”	”
2019년 소규모지역개발 및 농촌도로 정비사업 측량용역	2019.02.11.	11,780	”	”	”
2019년 *** 도로정비외 3개소 측량용역	2019.02.20.	8,740	”	”	”
2019년 ***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측량용역	2019.02.20.	10,720	”	”	”
2019년 *** 주변 환경정비사업 현황 측량용역	2019.02.26.	11,430	”	”	”
2019년 *** 하천 준설외 3개소 측량용역	2019.04.08.	8,650	”	”	”
2019년 *** 소규모수도 관로정비 측량용역	2019.05.09.	8,860	”	”	”
2019년 *** 마을안길외 3개소 측량용역	2019.05.13.	9,650	”	”	”
2019년 *** 간이급수시설외 3개소 측량용역	2019.10.01.	8,720	”	”	”
2019년 ***외 3개소 소규모수도 시설 측량용역	2019.10.30.	10,955	”	”	”

용역명	계약일	계약금액	성과품	계약업체	비고
2020년 소규모지역개발(본예산) 사업 측량용역	2020.01.28.	8,388	설계도서, 도면	측량설계공사	일반측량업
2020년 상수원보호구역 시설 정비사업 측량용역	2020.02.07.	13,140	”	”	”
2020년 농업기반시설 및 군계획시설 측량용역	2020.02.12.	1,955	”	”	”
2020년 *** 소규모수도시설외 3개소 측량용역	2020.02.28.	12,592	”	”	”
2020년 ***외 2개소 농촌도로 정비사업 측량용역	2020.06.10.	6,146	”	”	”
2020년 *** 소하천 정비사업외 2개소 측량용역	2020.10.12.	9,858	”	”	”
2021년 *** 농업기반시설외 2개소 측량용역	2021.01.28.	8,265	”	”	”
2021년 *** 배수로 정비외 4개소 측량용역	2021.01.28.	9,821	”	”	”
2021년 *** 수해복구외 3개소 측량용역	2021.01.28.	10,407	”	”	”

2. 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제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하고,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요건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의 사본에 의하여 증명하게 하고, 자격 등의 요건은 관계 기관(법령에 따라 설립된 관련 협회 등 단체를 포함한다)에서 발행한 문서의 사본에 의하여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에 의거 "엔지니어링산업"이란 엔지니어링활동을 통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하며, 공사발주를 위해 작성되는 기본 및 실시설계는 엔지니어링 활동에 해당

되고 따라서 설계를 주된 업무로 하는 용역은 엔지니어링 사업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18~2021년에 발주된 “2018년 *** 외 3개소 농촌도로정비 측량용역”외 21건의 용역은 과업의 목적이 “실시설계”의 작성임을 알 수 있고, 따라서 관련 법령에 따라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아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측량업의 등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측량업의 등록 등)에 따라 일반측량업을 등록한 자와 부당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 성과물 (측량성과서)외 설계도서 등을 납품받아 대가를 지급하는 등 측량용역 계약 및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장은

[주의] 앞으로 실시설계 등 엔지니어링 사업에 대한 용역계약을 측량업체와 체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4 】

정 선 군
시정

【제 목】 공금계좌 관리 부적정

【소관기관】 △△△

【조치기관】 △△△

【조치사항】 세입 8,796원

【내 용】

1. 현 황

○ 계좌보유 현황

관리담당	계좌내용(목적)	계좌번호	특이사항	비고
총무팀	면예산	-		
“	재배정	-		
“	공공요금 자동이체	-		
“	카드결제	-		
“	세입세출외현금	-		
“	일상경비	-	미사용	
“	재난관리기금	-	미사용	
“	일숙직비	-	미사용	
복지팀	정부양곡대금	-	‘17년 상반기 및 이전 발생 이자 & 원인불명 잔액 8,796원	
민원팀	민원 인증기 카드 결제	-		

2. 내 용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조제1항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별표 1]에 따르면 읍면동의 지출원은 ‘지출업무담당’이며(재무·회계업무담당까지 지정 가능),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지출업무담당자’이다.

- 또한 세입세출외현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사무관리상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현금으로 그 출납이 세입세출외현금 통장에 보관하는 것을 말하며 “제4절 세입세출외현금” 제75조 및 제76조에 따르면 세입세출외현금의 종류에는 1. 보증금 2. 보관금 3. 잡종금 등 기타(사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이며,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보통예금계좌(가상계좌를 포함한다)를 개설하여 세입세출외현금을 계좌이체로 납입받을 수 있다.
- 그러나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사용이 종료된 3건의 휴면 통장(일상경비, 재난관리기금, 일숙직비)을 정리하지 않았고, 복지팀과 민원팀에서는 정부양곡관리와 민원제증명카드수납용 거래를 세입세출외현금 통장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도 통장을 개설하여 운영·관리하고 있어 회계관직 미지정자가 정부양곡 및 민원제증명카드수납에 대한 세입세출외현금 회계처리를 하는 등 세입세출외현금을 부적정하게 운영하였으며, 복지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부양곡통장에서는 2017년 상반기와 그 이전에 발생한 이자 및 내용 불명의 잔액 8,796원을 적시에 세입처리하지 않아 감사일 현재까지 보유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 △ 장은

- [시정] ① 사용종료된 휴면계좌 3건(일상경비, 재난관리기금, 일숙직비)을 해지하여 주시고, 정부양곡관리 계좌에 있는 내용 불명의 8,796원을 세입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② 또한 정부양곡관리 및 민원제증명카드수납 업무를 세입세출외현금 통장으로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5]

정 선 군

시정

【제 목】 장애인등록증 회수 업무 소홀

【소관기관】 △△△

【조치기관】 △△△

【조치사항】 시정

【내 용】

1. 현 황

○ 장애인등록증 미 회수 현황

(단위: 명,매)

등록 장애인중 사망자	장애인등록증			비고
	계	회수	미회수	
39	39	11	28	

2. 내 용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제2항에 따르면, 등록된 장애인이 장애인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거나, 사망하면 그 등록증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읍면장은 장애인 사망하거나 장애인 등록이 취소, 재발급하는 경우 장애인 등록증이 부당하게 사용 할 수 없도록 장애인 등록증을 회수하여 폐기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럼에도, △△△에서는 장은 2018년 9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사망한 등록 장애인 39명 중 28명에 대하여 장애인 등록증을 회수·폐기하지 않는 등 장애인 등록증 회수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 △ △ 장 은

[시정] 사망한 장애인 등록증을 회수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등록하고 폐기처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6]

정 선 군

시정

【제 목】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부과 및 면제처리 부적정

【소관기관】 △△△

【조치기관】 △△△

【조치사항】 추정 10,000원

【내 용】

1. 현황

연번	신청일자	신청인	수수료 징수여부	비고(사유)
1	2018.10.29.	○○○	면제	분실
2	2018.08.27.	○○○	면제	분실

2. 내용

- 「주민등록법」 제27조 및 같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주민등록증 자체의 결함으로 자연적으로 훼손된 경우, 성명, 생년월일 또는 성별이 변경된 경우, 주민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주소 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주민등록증의 변경내용란이 부족한 경우, 자연적 재해, 재난으로 인해 외과적 시술 등으로 용모가 변하여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의 면제사유를 제외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에 따라 1명당 5천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그러나 △△△에서는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 업무를 처리하면서 수수료 면제대상이 아님에도 수수료를 면제(2건 10,000원)하는 등 수수료 부과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장은

[시정] ① 미징수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10,000원을 추징하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7]

정 선 군

시정

【제 목】 시설공사 추진 부적정
【소관기관】 △△△
【조치기관】 △△△
【조치사항】 회수 1,385천원
【내 용】

1. 현 황

[표] 공사 현황

사 업 명	계약금액 (천원)	공사기간	계약자	감사결과(지적사항)	비 고
2018년 @@@ 수해복구공사	59,666	‘18.10.25. ~ ‘18.12.21.	**건설	- 구조물공 역T형옹벽, L형옹 벽의 과다설계(10㎡)된 마감거 푸집(합판4회)을 정산변경 하지 않고 준공처리함. * 회수금액 : 549천원	
2019년 %%% 도로교량 확장 정비공사	19,830	‘19.03.21. ~ ‘19.04.18.	@@건설	- 구조물공(석축쌓기)을 시공하면 서 석축기초 내측 거푸집을 설치 하지 않음. * 회수금액 : 251천원	
2019년 ### 농촌도로 정비공사	17,244	‘19.10.31. ~ ‘19.11.27.	\$\$건설	- 콘크리트 포장 시공구간 접속포 장 2개소(50㎡)에 대한 보조기층 포설 부적정. * 회수금액 : 585천원	

2. 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 제42조 및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2014-297호)』 에 의하면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감
독자는 그 감독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 74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39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서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에서는 상기 “1 현황”과 같이 부적절하게 시공하였으나 시정 및 설계 변경을 하지 않고 1,385천원(제경비포함)을 부당하게 집행하는 등 공사업무 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장은

[시정] ‘2018년 @@@ 수해복구공사’에서 549천원, ‘2019년 %%% 도로교량 확장 정비공사’에서 251천원, ‘2019년 ### 농촌도로 정비공사’에서 585천원, 이상 3개 사업에서 과다지출된 1,385천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